

##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 
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3년 9월 18일  
국무조정실장

### 1. 선발개요

채용구분	인원	주요담당업무	근무예정부서 (근무예정지역)
기간제근로자	1명	심판청구 사무보조 및 비서	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(세종특별자치시)

※ 휴직자 대체인력

### 2. 근무조건

- 계약기간 : 채용일('23.10.10.예정)부터 '24.3.31.까지
- 보수 :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내부 운영지침에 따름
  - '23년 국무조정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
    - ※ 월 201만원 내외
    - ※ 초과근무수당, 명절휴가비, 연가보상비 등
    - ※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  
(보험료 월 보수액에서 차감)
- 근무지 : 정부세종청사 4동 조세심판원
-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
  - ※ 업무필요에 따라 기재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, 휴일근무 가능(수당 별도지급)

### 3.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

#### ○ 기본요건

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다. 대한민국 국적인 자(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)

라.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펼하였거나 면제된 자

마. 응시연령 :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

바.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

#### ○ 응시자격 요건

구 분	응시자격 요건
필수요건	• 가~바 항목 충족자
우대조건	•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- 한글, 엑셀 등 S/W 관련 자격증 소지자

## 4. 시험방법

### ○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채용예정 직무에의 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아래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로 결정  
※ 서류심사 기준 : 자기소개서, 자격증 등

### ○ 2차시험 : 면접전형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상대로 면접을 통해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성, 의사표시의 정확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등 종합평가

### ○ 최종합격자 결정

- 면접전형 응시자 중 면접평정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

## 5. 채용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23.9.18(월) ~ '23.9.24(일)	·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게시
원서접수	'23.9.18(월) ~ '23.9.24(일)	· 전자우편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3. 9. 27(수) 예정	·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게시
면접심사	'23. 10. 5(목) 예정	·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
최종합격자 발표	'23. 10. 6(금) 예정	·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게시
채용예정일	'23. 10. 10(화) 예정	

## 6. 원서접수

① 접수기간 : 2023. 9. 18.(월) ~ 2023. 9. 24.(일)

② 접수방법 : 전자우편접수

③ 전자우편 : gyulsong@korea.kr

※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일 18: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

## 7.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 1부 : 【별지서식 1】

② 자기소개서 1부 : 【별지서식 2】

③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: 【별지서식 3】

④ 경력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
※ 경력증명서상 ① 담당업무, ② 근무기간(년월일), ③ 직위 · 직급, ④ 전임 여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

⑤ 주민등록 초본 1부(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)

⑥ 자격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
### ※ 서류제출 주의사항

가. 제출 서류 중 ①, ②, ③번 서류의 경우,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
(반드시 서명된 컬러스캔파일을 제출)

나. 응시원서에 작성한 사항 중 ④~⑥의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 
심사 시 불인정

다. 제출서류는 응시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(권고)

## 8. 유의사항

- ①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  -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③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④ 근로계약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심판원 행정실(☎ 044-200-17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